

예 산 총 칙

2017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14,691,946	9,440,758
일반회계	302,266,089	9,067,983
특별회계	12,425,857	372,776
기타특별회계	12,425,857	372,77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145,280	94,358
의료급여특별회계	1,202,892	36,087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999,523	29,986
주택사업특별회계	20,000	600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93,748	2,812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240,400	7,212
농어민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	1,741,742	52,252
간척농지개발사업특별회계	15,141	454
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2,481,166	74,435
장흥군수질개선특별회계	2,435,965	73,079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특별회계	50,000	1,50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7,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금(세), 재정보전금, 특정목적기부금 및 포상금은 예산승인 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 할 수 있다.